

함께 성장하는 힘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가이드북

22. 08. ver.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CONTENTS.

PART 1

연합회 이해하기

1. 연합회의 정의와 종류	1
2. 연합회 업무 체계	1
3. 연합회 간 비교	2

PART 2

연합회 설립하기

1. 설립 단계 한 눈에 보기	4
2. 유형별 제출 서류	5
가. 협동조합연합회	5
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7
3. 신청서별 작성 방법	8
3-1. 법정서식 작성 방법	8
가. 설립 신고서 및 설립인가 신청서	8
나. 임원 명부	15
다. 사업계획서	16
1) 협동조합연합회	
2) 사회적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라. 수입 · 지출예산서	23
1) 협동조합연합회	
2) 사회적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27

3-2. 자유서식 작성 방법	28
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28
나. 창립총회 의사록	30
다. 임원 약력	33
라. 출자자 명부	34
마. 세부사업계획서	35
바. 정관	39
1)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	39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	66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	92
4. 신청서류 검토 체크리스트	122

PART 3

연합회 설립 마무리하기

1. 설립신고(인가)증 발급	128
2. 사무 인계 및 출자금 납입	129
3. 설립 등기	130
4. 사업자 등록	131

PART 4

제출 서식 모음

1. 법정서식	132
2. 자유 서식 예시	145

PART 1.

연합회 이해하기



1. 연합회의 정의와 종류

▶ 연합회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연합회

-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

-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

2. 연합회 업무 체계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업무 총괄
-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협동조합 정책협의회 운영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등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수리, 청산 사무의 감독, 해산등기 촉탁, 감독,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협동조합 교류협력, 경영지원,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업무
- 연합회 설립신고(인가) 신청 내용 확인 및 보완요구,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경영공시 내용 확인 및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 등

3. 연합회 간 비교

구분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통점	근거법률	협동조합기본법					
	사업목적	회원 실익 증진					
	운영방식	회원당 의결권 및 선거권 차등 부여 가능 (차등 기준은 정관에 명시)					
	책임방식	유한책임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단,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제사업 가능)					
차이점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선택 가능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회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개별법 협동조합 (신탁, 생협)			
	설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			
	임원	회원에 속한 조합원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회원에 속한 조합원 (자연인만 가능)	회원에 속한 조합원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경영공시	의무 아님 (단,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의무사항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이상	잉여금 30/100이상	영리법인: 10/100 이상			
				비영리법인: 30/10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당	배당가능	배당금지	영리법인: 배당가능			
				비영리법인: 배당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조사 및 시정명령,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조사 및 시정명령,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 시스템 상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자연인을 회장으로 선출할 것을 권고

PART 2.

연합회 설립하기

—

1. 설립 단계 한 눈에 보기

설립 절차	내용					
구성원(회원) 모집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협동조합 3개소 이상 모집 (이종연합회는 5개소 이상)					
정관, 사업계획 등 구상 및 작성	설립할 기관의 목적·사업내용·수익확보수단 등 논의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정관, 사업계획·예산 확정, 임원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결의					
설립인가(신고) 신청서류 구비	신청서류 작성					
설립인가(신고) 신청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협동조합과)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서류 검토·보완 및 필요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현장 실사					
설립인가(신고)증 발급	기획재정부 → 신청기관					
출자금 납입	회원 → 회장					
설립등기	연합회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table border="1"> <tr> <td>협동조합연합회</td><td>출자금 납입이 끝날 날로부터 14일 이내</td></tr> <tr> <td>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td><td rowspan="2">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td></tr> <tr> <td>이종협동조합연합회</td></tr> </table>	협동조합연합회	출자금 납입이 끝날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출자금 납입이 끝날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자등록	연합회 → 관할 세무서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청서류 접수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6)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 접수처 연락처 및 세부주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알림마당 → 공지 사항 → '신청서 접수 안내' 참조

2. 유형별 제출 서류

가. 협동조합연합회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서식예시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서식예시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서식예시
5	임원명부(임원 약력 포함)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 약력] 서식예시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자명부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서식예시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1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임원별 1부
12	총회 증빙자료	총회 참석자 명부	-
13		총회 공고 증빙 자료	-
14		총회 당시 사진 등	-
15	각 회원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6		법인인감증명서	-
17		연합회 가입 의결을 위한 이사회 회 혹은 총회 개최 공고문	서식예시
		연합회 가입을 의결한 이사회 혹은 총회 의사록	서식예시
18		조합원(출자자)명부	총 출자 내용 포함

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설립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	정관 사본		서식예시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서식예시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서식예시
5	임원명부(임원 약력 포함)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 약력] 서식예시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8	출자자명부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서식예시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1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임원별 1부
12	총회 증빙자료	총회 참석자 명부	-
13		총회 공고 증빙 자료	-
14		총회 당시 사진 등	-
15	각 회원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6		법인인감증명서	-
17		연합회 가입 의결을 위한 이사회 혹은 총회 개최 공고문	서식예시
		연합회 가입을 의결한 이사회 혹은 총회 의사록	서식예시
18	조합원(출자자)명부		총 출자 내용 포함

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설립인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 서식
2	정관 사본		서식예시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서식예시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서식예시
5	임원명부(임원 약력 포함)		[임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임원 약력] 서식예시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8	출자자명부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서식예시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1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임원 별 1부
12	총회 증빙자료	총회 참석자 명부	-
13		총회 공고 증빙 자료	-
14		총회 당시 사진 등	-
15	각 회원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6		법인인감증명서	-
17		연합회 가입 의결을 위한 이사회 혹은 총회 개최 공고문	서식예시
		연합회 가입을 의결한 이사회 혹은 총회 의사록	서식예시
18		조합원(출자자)명부	총 출자 내용 포함

3. 신청서별 작성 방법

3-1. 법정서식 작성 방법

가. 설립신고서 및 설립인가 신청서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9. 29.>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일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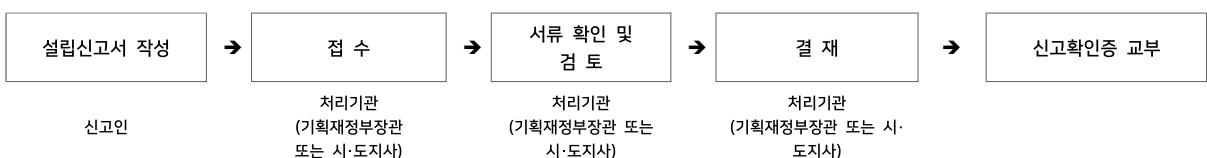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일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 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1인당 최저출자금(원)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주사업 유형 (·사회적 협동조합만 작성)	[]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5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 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m]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0. 9. 29.>

이중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의 조합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회원 현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총계
설립유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제1항에 따른 이중협동조합연합회(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제2항에 따른 이중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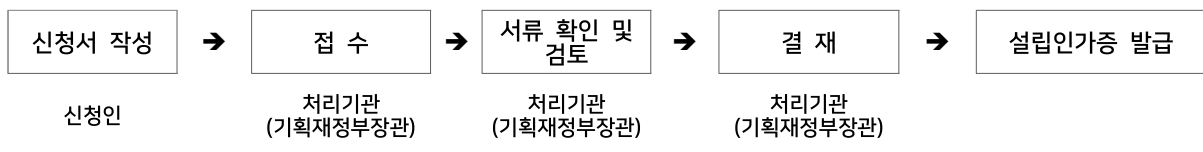
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에 동의한 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공통] 설립신고서(인가 신청서) 작성 방법

• 설립신청인

설립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연합회는 설립동의자가 모두 법인이므로, 연합회에 가입한 법인 회원사 중 1개 법인의 정보를 기재 ※ 회원사 외 관계자 신청인 자격 없음(행정사 등)

• 법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 설립하고자 하는 연합회의 정보와 총회를 통해 선출된 회장의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기재
- 신청 당시 법인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회장의 전화번호 기재
- 법인 소재지는 총회를 통해 의결된 연합회 주사무소 소재지 기재

• 설립동의자수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출자자 명부」의 회원 수와 동일하게 기재

• 출자금 납입총액

- 「출자자 명부」의 출자금 총액과 동일하게 기재

• 창립총회 개최일

- 창립총회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의 창립총회 개최일 기재

• 하단 신청인 날인

- 설립신청인인 법인명 법인인감 날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작성 Tip

법 인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해당되지 않음[]

•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합회 임원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에 해당함

* 임원 결격사유('22년 기준)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 1. 5.>,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합회의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임원은 직원을 겸할 수 없음(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신청서 작성 Tip

회원 현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소상공인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총계

• 회원현황 총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출자자 명부」의 회원수와 동일하게 기재

[참고] 법인명 관련 유의사항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유형(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반드시 포함
 -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사용 금지
 - 국가: 대한민국, 대한, 한국, 코리아, KOREA, Republic of Korea, ROK 등 국가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시·도: 서울, 경상, 전라, 제주, Gangwon 등 시·도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 다만 시·군·구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동일 명칭 사용 제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등기한 명칭 사용 금지
 - 협동조합기본법 및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동일명칭 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에서 명칭 입력
 - (명칭 사용 제한)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연합회가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 사용 금지 및 ② 사업구역과 사업분야·회원 구성을 병기함으로써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 최소화
 - (영문명칭)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예: 애플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애플 협동조합연합회(Apple Federation of Cooperatives), 영문 명칭만 사용하는 것은 안 됨(예: APPLE 협동조합연합회))
-

[참고] 법인명 국가/시·도 명칭 사용 가능 예외 조건(시행령 제2조)

①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 i)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 ii)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 중 2분의 1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 iii)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 iv)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협동조합연합회의 국가 명칭 사용 요건 관련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 ①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수가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일 것
- ②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으로 함
 - ※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 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

②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 i)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ii)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의미) 중 2분의 1 이상의 시·군·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 iii)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 iv)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협동조합연합회의 시·도 명칭 사용 요건 관련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 ①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수가 시·도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일 것
- ②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으로 함
 - ※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 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

나. 임원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임 원 명 부

연 번	직위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지 (법인 주소)	연락처

- 총회를 통해 선출된 임원의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
- 연합회의 임원은 각 회원사의 조합원 중에 선출
 - 단, 연합회의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이 될 수 없음을 유의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법인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주소를 기재
 - 다만 현재 법인세법 109조에서 법인 설립 시 세무서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국세청 시스템 상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자연인을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권고
 -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의사 및 능력이 필요

[참고] 임원 관련 유의사항

- ☐ (최소임원수) 최소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 ☐ (직위) 창립총회 의사록 상의 선출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 ☐ (정관과 부합)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이사의 수 및 자격 등이 정관에 부합하는지 확인

다. 사업계획서

1) 협동조합연합회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9. 29.>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쪽 중 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	--	--	--	--	--	--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회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	--	--	--	--

조직도						
-----	--	--	--	--	--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협동조합만 작성하고, 해당 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계획	명					
------------	---	--	--	--	--	--

작성방법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쪽 중 2쪽)

해당 연도
사업계획

작성방법

해당 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시행규칙 별지 제 19호의2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20. 9. 29.>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쪽 중 1쪽)

조직 개요	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 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회원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직원 고용 계획				
작성방법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해당 연도
사업계획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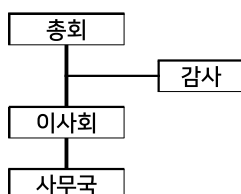
해당 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 조합원(회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 (조직개요) 설립 단계이므로 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기재

- (연합회명) 정관에 기재한 연합회명과 동일하도록 기재
- (출자금) 창립총회일 기준 예정 출자금 총액 기재(출자자명부와 통일)
- (조직연혁) 연합회 설립 준비과정의 주요 활동(창립총회개최 등) 기재
- (설립목적) 정관의 제2조(목적)을 기재
- (의사결정기구)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 표기
 - 협동조합기본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의사결정기구인 '조합원(회원)총회', '이사회'에는 반드시 [√] 표기
 - '대의원총회'는 실제 대의원총회를 구성한 경우에만 [√] 표기
- (조직도) 연합회의 조직 현황을 작성(아래 조직도 예시 참고)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협동조합만 작성하고, 해당 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계획	명							

- (임원 현황) 선출된 연합회 임원의 직위(회장, 이사, 감사 등), 성명, 주요 경력, 직원 겸직여부(○/X 혹은 해당/비해당)를 기재
- (조합원현황)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조합원 현황을 작성하지 않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서식에는 조합원현황이 없음
- (직원고용계획) 회원조합에 속한 조합원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할 인원의 총합을 기재
- 비정규직은 ① 기간제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③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

[참고]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 용어 정의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해당연도 사업계획	
--------------	--

- (해당연도 사업계획) 정관에서 정한 사업별로 각각 사업계획 작성
- 정관 “사업의 종류”에 따른 사업명을 기재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 개요와 추진 방법, 사업 물량(제품·서비스 공급),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해당하는 수치 등 기재
-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해당연도 사업계획에는 사업 개요만 간략하게 작성하고,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권고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Tip

- (조직개요) 최초 설립신고 시 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음
- (기준시점) 신청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일이 3개월 이하일 경우,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각 1부씩 작성

라. 수입지출예산서

1) 협동조합연합회(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9. 29.>

[] 협동조합 수입 · 지출 예산서

[] 협동조합연합회

회계연도: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기이월금			경상비	인건비	
사업수입	00사업			운영비	
	"			소계	
	"			00사업	
	소계		"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사업비	"	
	지원금			"	
	기타			소계	
	소계		사업외지출	기부출연금	
출자금		지원금			
차입금		기타			
기타수입		소계			
"			출자금반환		
"			차입금상환		
"			배당금		
"			기타지출		
"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업수입 및 사업비 항목은 정관으로 정한 사업명에 준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2) 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수입 · 지출 예산서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수입 (단위: 원)</th> <th colspan="4">지출 (단위: 원)</th> </tr> <tr> <th>구분</th> <th>금액</th> <th>구성비(%)</th> <th></th> <th>구분</th> <th>금액</th> <th>구성비(%)</th> <th></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주 사업</td> <td>○○사업</td> <td></td> <td></td> <td rowspan="4">주 사업</td> <td>○○사업</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기타사업</td> <td>○○사업</td> <td></td> <td></td> <td rowspan="3">기타사업</td> <td>○○사업</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사업비 합계</td> <td colspan="4">사업비 합계</td> </tr> <tr> <td rowspan="4">사업외 수입</td> <td>이자수익</td> <td></td> <td></td> <td rowspan="4">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td> <td>인건비</td> <td></td> <td></td> </tr> <tr> <td>후원금 등</td> <td></td> <td></td> <td>취약계층 인건비</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운영비 등</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출자금</td> <td rowspan="3">사업외 비용</td> <td>이자비용</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차입금</td> <td>잡손실 등</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td> <td colspan="4">출자금 반환</td> </tr> <tr> <td colspan="4">"</td> <td colspan="4">차입금 상환</td> </tr> <tr> <td colspan="4">"</td> <td colspan="4">예비비 등</td> </tr> <tr> <td colspan="4">합계</td> <td colspan="4">합계</td> </tr> </tbody> </table>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주 사업	○○사업			주 사업	○○사업			"			"			"			"			"			"			기타사업	○○사업			기타사업	○○사업			"			"			"			"			사업비 합계				사업비 합계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출자금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차입금				잡손실 등			"				"			"				출자금 반환				"				차입금 상환				"				예비비 등				합계				합계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주 사업	○○사업			주 사업	○○사업																																																																																																																																																								
	"				"																																																																																																																																																								
	"				"																																																																																																																																																								
	"				"																																																																																																																																																								
기타사업	○○사업			기타사업	○○사업																																																																																																																																																								
	"				"																																																																																																																																																								
	"				"																																																																																																																																																								
사업비 합계				사업비 합계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출자금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차입금					잡손실 등																																																																																																																																																								
"					"																																																																																																																																																								
"				출자금 반환																																																																																																																																																									
"				차입금 상환																																																																																																																																																									
"				예비비 등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구분, 금액, 구성비는 주 사업 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일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주 사업 및 기타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사업명에 준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방법

회계연도: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 조직개요

- (회계연도) 해당 회계연도 기재할 것
- (연합회명) 정관에 기재한 연합회명과 동일하도록 기재
- (출자금) 창립총회일 기준 예정 출자금 총액 기재(출자자명부와 통일)

□ 수입·지출 공통 내용

- 설립신고 당시 전기이월금은 작성하지 않음
- (사업수입·사업비) 정관의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예상 수입·지출 작성
 - 정관 ‘사업의 종류’ 명칭 그대로 작성
 - 해당 사업 수입·지출내역 없을 경우 ‘0’으로 작성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시, 주사업에 사업 수입·지출을 일괄 작성하고, 기타사업은 공란으로 둘 것

□ 수입 항목

- (사업외 수입) 사업을 통한 수입 이외의 수입 항목 및 예상 금액을 기재
 - 손익계산서의 ‘영업외수익’ 항목과 동일
- (출자금)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출자할 출자금 총액 기재
- (차입금)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금융기관 등(개인 포함)으로부터 차입할 차입금 총액을 기재

□ 지출 항목

- (경상비) 연합회의 일반적인 조직운영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재
- (사업외지출) 사업비 및 경상비 이외에 부수적 활동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재(손익계산서의 '영업외비용' 항목과 동일)

※ (예) 이자비용, 기부금 지출, 잡손실 등

- (출자금반환)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반환될 출자금 총액 기재
 - 설립 당시의 연합회는 반환할 출자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0'으로 작성
- (차입금상환) 차입금 중 해당 회계연도 기간 동안 반환할 총액 기재
- (배당금)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을 모두 합해 회원 배당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재

[참고] 수입지출예산서 작성Tip

- (조직개요) 최초 설립신고 시 조합명, 주소, 출자금만 적음
- (제출서류 간 일관성) 출자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등 제출서류간 부합한지 여부 확인
- (기준시점) 신청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일이 3개월 이하일 경우,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 (단위) 수입 및 지출의 세부 금액은 원 단위로 작성
- (수입과 지출의 합계가 일치) 수입 및 지출의 합계는 일치하도록 작성
 - * 예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 불필요
 - ** 반면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기재

마.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조합원(회원)

연번	발기인/ 설립동의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해관계자

- 발기인(정관에 기명날인 한 자)과 설립동의자를 구분
- 연합회 설립동의자는 모두 법인이므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 연합회는 이해관계자 유형 작성하지 않음

[참고]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작성 Tip

- 창립총회 참석한 설립동의자와 일치하여야 함
 - 창립총회 의사록 상 '재적 설립동의자' 참고하여 작성
 - 창립총회 이후 회원(설립동의자)의 추가 및 탈퇴 원칙적으로 불가

* '설립동의자'란,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시행령 제19조)

3-2. 자유서식 작성방법

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서식예시)

○○○ 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공고

○○○ 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연합회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회원 자격요건: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4. 의결 사항
 - 가. 정관 확정
 -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 다. 임원 선출
 -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20 . . .

(가칭) ○○○ 협동조합연합회
발기인 대표 ○ ○ 협동조합 (인)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회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다만,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개최 취지에 맞게 운영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은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이며, 이외 기관의 상황에 따라 의결사항을 자유롭게 규정 가능
- 설립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고문 게시 사진, 이메일 발송, SNS 게시 화면 등) 함께 제출

[참고] 공고기간 산정 방법

□ ① 총회 공고일과 ② 총회 당일을 제외한 7일 이상을 공고

* 5월 15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공고기간의 첫째날은 공고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소 5월 7일 이전에 공고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12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공고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총회일

나. 창립총회 의사록 (서식예시)

〇〇〇 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 . . (○요일)

2. 총회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 . . (○요일) ○○시

나.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참석자

가. 재적 설립동의자 : ○○개소

연번	법인명	이사장

나. 참석 설립동의자 : ○○개소

연번	법인명	이사장	총회 참석자

다. 참관인 : ○○명(□□□ 협동조합 □□□ 이사, △△협동조합 △△ 조합원)

4.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5. 총회 내용

가. 설립동의자대표 ○○○협동조합(○○○ 이사장)이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나. 성원보고와 개회 선언

다. 의사록 서기 지명과 기명날인인 선출

라. 의사일정 확정

마. 제1호 의안. ○○○

20 . . .

(가칭) ○○○ 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

회장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 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의장 및 기명날인인 선출과정, 필수 의결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필수의결사항에는 ① 정관, ② 사업계획과 예산, ③ 임원의 선출, ④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법인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개소 이상 법인인감으로 기명날인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자 3인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총회에 참석한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기명날인인 인감 날인 시,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 기명날인인으로 선임된 회원조합은 반드시 법인인감으로 날인
 -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발급까지 유효
- 창립총회 개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참석자명부, 사진 등)
- 법인 등기를 위해 총회 의사록 간인(공증시 요구), 법인의 주 사무소 소재지 기재
 - * 등기소마다 상이할 수 있음

[참고] 연합회의 임시의장 선임 방법

- 연합회의 창립총회 진행 시, 아직 회장이 선임되지 않음에 따라 발기인대표가 임시의장을 맡아 개회하게 됨
- 연합회의 발기인대표는 법인(회원 조합)이며, 실제 의사 진행을 위해서는 자연인의 능력이 필요하므로 임시의장 선임 시 회원조합명과 직무대행자 성명을 동시에 기재
 - 의장 외 설립동의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도 동일

[참고] 임시의장에서 회장으로 의장이 변경된 경우

- 창립총회 진행시, 발기인대표가 임시의장을 맡아 개회한 이후 임원 선출을 통해, 회장 선출된 이후 의장직을 인계하는 경우 발생
- 창립총회 중 의장 변경 시, 변경된 의장 1인만 기명날인시 등기과정상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총회 중 의장이 변경되는 경우, 임시의장과 의장 모두 기명날인

[참고] 법인 회원의 총회 참석 준비사항 및 임원 선정 관련 안내

- 연합회 회원은 법인으로, 총회 의결 등을 대행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함
 - 회원 조합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직무대행서' 함께 제출
 - 직무대행은 조합의 이사장이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예외의 경우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장이 아닌 조합원'이 담당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인이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회원 조합에 속한 자연인 조합원만 임원 선출 가능

[참고]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Tip

-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참석자) 회원조합 직무대행자 외 조합원이 연합회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등 연합회 창립총회에 발기인·설립동의자가 아닌 개인이 추가로 참여 시, '재적·참석 설립동의자' 외에 '참관인' 추가하여 작성
- (임원의 선임) 회장 1명을 포함한 최소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의 수 및 자격 등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임원 선출 시 이사를 먼저 선출한 후, 선출된 이사 중에서 회장을 선출

<임원 선임의 절차>

① 이사 선출 완료 → 선출된 이사 중, 회장 선출(○)

② 회장 선출 완료 → 이사 선출(×)

※ 일부 등기소에서는 임원 선임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기 반려 상황 발생

- 회장은 다른 연합회 회장 겸직 불가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임원은 자연인만 가능(법인 임원 불가)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수가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원 겸직 가능

<임원 겸직 금지의 예외>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총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다. 임원약력

임원약력				
성명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년	월	일	학력 / 경력 / 자격 사항	비 고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인)				

- 임원약력에 「학력 / 경력 / 자격 사항」 등 기재
-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란에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기재
 -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본인이 확인 후 반드시 기재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음
- 법인 등기를 위해 임원 취임 승낙서 필요
 - ※ 임원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함께 제출

라.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출자자 명부)

○○○ 협동조합연합회 출자자 명부					
※ 1좌당 금액 : 00000원				(단위: 좌, 원, %)	
연번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출자좌수	출자금액	비율
1	○○협동조합	0000000-00000000	50	500,000	10
2	△△협동조합	0000000-00000000	100	1,000,000	20
3		•			
4		•			
※ 회원 1인의 출자좌수는 40/100을 초과해서는 안 됨					
합 계				5,000,000	100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과 해당 출자자의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재
 - 1좌당 금액은 정관에 규정한 1좌당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 출자자명부 상의 회원 수는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상의 회원 수와 동일해야 함

[참고] 출자자명부 작성 Tip

- ☐ 1좌당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모든 회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 회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40% 초과 불가

마. 세부사업계획서

○○○ 연합회 세부사업계획서

※ 이 사업계획서 양식은 참고용으로 연합회의 사업 특성에 맞게 서술

I. 사업 추진 배경 및 내외부 환경분석

- 연합회 설립의 주요 배경 및 필요성 등을 기재

구분	주요내용
설립 배경	- 연합회 추진배경 - 연합회 설립 추진 필요성
내외부 환경분석	- (외부) 사업 수요 분석 - (내부) 회원의 사업수행 경험 등

II.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정관상 사업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인력 배치 및 사업추진 계획, 향후 사업 발전 방향 등) 제시

구분	주요내용
사업목표	- 연합회 설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추진 방향 및 추진 체계	- 사무실(또는 사업장)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 - 인력 배치 및 확보 계획 - 사업 수행 일정 및 추진 계획 -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인력/물적자원 확보 등) 및 사업준비상황 등 제시

Ⅲ.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 정관에 기재한 사업의 수행계획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1) ○○○ 사업(정관의 사업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

구분	주요내용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수입확보 방안	

2) ○○○ 사업

구분	주요내용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수입확보 방안	

3) ○○○ 사업

구분	주요내용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수입확보 방안	

IV. 예산 계획

1. 사업 예산 정리(※ 사업별 수입 지출 정리한 예산안 작성)

사업명	수입			지출		
AAA 사업	1. 0000 판매수입	0,000원×00회	00,000 원	1. 인건비	0,000원×0월	00,000원
	...	...	...	2. 교육비	0,000원×0회	00,000원
BBB 사업	1. 0000 판매수입	0,000원×00회	00,000 원	1. 인건비	0,000원×0월	00,000원
...	...	...		2. 교육비	0,000원×0회	00,000원
	합계			합계		

2. 운영 예산 정리(※ 사업 예산을 제외한 조직 운영에 경상비 예산 정리)

기관 운영비		
1. 인건비	0,000원×0월	00,000원
2. 교육비	0,000원×0회	00,000원
...	0,000원×0월	00,000원
합계		

□ 정관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별로 세부 사업계획 작성

- 사업 추진 개요, 추진 방향, 사업별 세부 계획, 예산, 그 외 사업 수행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사업계획서에는 간략한 사업 개요만 작성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권고

[참고]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Tip

□ 제출 서류 간 일관성 유지 필요

-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정관, 그 외 입증서류' 등과의 사업 내용 및 예산계획 일치

바. 정관

1)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

조문	유의사항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연합회는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회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조, 제16조, 제72조 ·연합회의 사업과 회원 유형에 맞는 설립목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과 달리 법인등기부상에는 '목적'만 등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등기신청 시에는 정관 제2조(목적)과 제60조(사업의 종류)를 통합하여 등기부상 '목적'사항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法)	·법 제7조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法)	·법 제8조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u>이사회의 의결에 따라</u>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까지 적는다. ('경기도' · '강원도' 등은 지양) ·지사사무소 설치 방법은 정관 위임사항으로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조

조문	유의사항
제5조(사업구역)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사업분야와 내용, 회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국내외' 또는 '전국'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제6조(광고방법) ① 연합회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광고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정하는 경우, 정관에 사이트 주소까지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16조, 제72조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곳으로 한다.	·권고사항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촉구)하는 의사를 알리는 것으로 제명 등의 사유로 회원에게 통지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회원이 지정한 연락처로 7일 이상 통지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법 제9조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法)	·(규약)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연합회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총회 의결사항인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규정)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대한 세부 절차나 필요서식(양식), 기타 협동조합 연합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인 규정으로 정함 ·법 제17조, 제72조

조문	유의사항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u>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u> 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法)	·연합회는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회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법 제73조 제2항)
제11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 자격 제한 가능 ·회원은 약정한 출자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짐 ·법 제16조, 제72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후 ○개월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출자금 납부 시기는 회원 자격과 연계되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16조, 제72조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法)	·법 제21조, 제76조
제12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法)	·협동조합연합회가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 탈퇴 회원의 출자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으나, 회원은 납입한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법 제22조, 제76조
제14조(탈퇴) ① 회원은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法)	·탈퇴의사를 알리는 방법, 형식 등을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탈퇴”란 협동조합연합회가 존속하는 중에 회원이 회원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조문	유의사항
	탈퇴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 가능 ·법 제74조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法) 1.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제2항의 1,2호 외의 사유를 정관에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법 제74조
제15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法)	·“제명”이란 협동조합이 특정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회 의결·가 필요 ·제명 의결 시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법 제25조, 제76조
2. <u>○년 이상 계속해서</u>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합회에서 기간만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함. 다만, 연합회의 주 사업 유형·특성 및 회원의 권리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단기간으로는 정하지 않도록 한다. ·법 제25조, 제76조
3.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호 외의 제명 사유는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法)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法)	·제명하고자 할 때는 제명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① 총회 10일 이전 제명사유 고지 및 ②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 ·법 제25조, 제76조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	유의사항
제16조(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法)	·탈퇴/제명 회원에 대한 지분 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76조
②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法) 다만,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76조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法)	·행사시기는 법령사항이나 행사방법은 정관 위임사항으로 지분환급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76조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法)	·법 제26조, 제76조
제17조(탈퇴·제명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연합회는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회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法)	·탈퇴·제명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범위)는 정관위임사항으로 연합회에서 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 탈퇴 회원의 출자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으나, 회원은 납입한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탈퇴·제명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범위)는 정관위임사항으로 연합회에서 결정하여 정할 수 있음 ·법 제27조, 제76조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회원은 ○자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자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회원이 출자해야 하는 출자좌수는 1좌 이상으로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출자 1자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제76조

조문	유의사항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法)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76조
③ 출자금은 ○일까지 납입한다.	·출자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 취득 시기, 분납 가능횟수, 분납 완료 시기 등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일시납일 경우, 가입일부터 ○일까지/ 분납일 경우에도 ~까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法)	·법 제22조, 제76조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76조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권고사항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회원에게 발급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일 후까지 회원의 지분 변동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권고사항 ·지분변동상황은 회원 재산권과 관련되므로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7-10일 내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제20조(지분의 범위) 연합회의 재산에 대한 회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권고사항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

조문	유의사항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된 준비금 등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회원 지위의 양도 또는 회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회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받아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보유하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을 현금화 하여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 제55조, 제82조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권고사항
② 연합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法) ③ 연합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法)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法)	·출자좌수의 감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와는 달리 법령사항은 아니지만, 회원 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총회의 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 ·법 제53조, 제82조
⑤ 그 밖의 출자감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권고사항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法)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法)	·법 제54조, 제82조

조문	유의사항
제24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연합회는 사업운동을 위하여 회원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기타사항 ·연합회가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가능하다.
제25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과태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가능 ·과태금 금액은 규약으로, 과태금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6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u>100분의 10 이상</u> 을 적립하여야 한다.(法)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50조, 제82조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법 제50조, 제82조
제27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u>100분의 ○○ 이상</u> 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이란 연합회가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사업준비금 외에 정관으로 임의적립금의 다양한 목적을 정해 적립 가능하며,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 가능함 ·임의적립금의 적립범위는 정관에 정해야 한다. ·법 제50조, 제82조

조문	유의사항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u>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u> 지출할 수 있다.	·사업준비금 외에 임의적립금의 다양한 목적을 정할 수 있다. ·법 제50조, 제82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法)	·“총회”란 회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연합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연합회의 필수기관 및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의미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으로서 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법 제77조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法)	·법 제28조(③~⑤), 제77조, 제79조
제29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法)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法)	·대의원총회를 두지 않기로 한 경우, 정관에서의 제29조, 제30조는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은 정관위임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반드시 정해야 한다. ·법 제31조, 제79조, 시행령 제9조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法)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100명 또는 100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다. ·법 제31조, 제79조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권고사항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法)	·법 제31조, 제79조
⑥ 대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대의원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출방법, 자격 등은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31조, 제79조

조문	유의사항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法) ⑨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法)	·법 제31조, 제79조
제30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대의원 의무, 자격상실 등에 대해서는 연합회 특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31조, 제79조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u>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u>에 회장이 소집한다.(法)	·총회 소집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28조(③~⑤), 제79조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u>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사유, 소집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28조(③~⑤), 제79조

조문	유의사항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u>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u>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法)	·통지방법은 정관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이 입증 가능한 방법을 정해야 한다. ·공고 제목에 결정내용이나 주요 공고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28조(③~⑤) 제79조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5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3조의2(회원제안권) ①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회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한 회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회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회원은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으로 할 것을 회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 ·회원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배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함 ·권고사항

조문	유의사항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法)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u>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의 보수, 연합회의 차입금 한도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29조, 제79조
제35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회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법 제29조, 제79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연합회와 회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권고사항
제36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조문	유의사항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회원의 제명 4.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 ·법 제29조, 제79조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당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75조
제38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法)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法)	·임시의장, 의장,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 기명날인 ·연합회의 회원(법인)은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임원(개인)의 경우에도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 날인 ·법 제30조, 제79조
제39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사항
제41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法)	·“이사회”란 연합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원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법 제32조, 제79조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法)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조문	유의사항
	정할 수 있다. ·법 제32조, 제79조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法)	·법 제32조, 제79조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개의(開議)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79조
⑤ 이사는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회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사항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法)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u>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u> 6.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1~4호, 6호는 법령사항)에서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호는 권고사항)을 추가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법 제33조, 제79조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조문	유의사항
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법 제32조, 제79조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사회의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79조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79조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u>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u> 와 <u>1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u> 를 둔다.	·임원의 정수는 법에서 규정한 최소 정수(회장 1명 포함한 이사 3명, 감사 1명)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4조, 제79조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기타사항
제4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法)	·임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79조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法) 다만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외의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34조, 제79조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	

조문	유의사항
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法)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에게 속한 조합원의 배우자, 회원에게 속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에게 속한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원에게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법 제37조, 제79조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u>선거일 공고일</u> 부터 <u>선거일까지</u> 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法)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하는 법 제37조 제2항과 동일 취지의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8헌가12)을 받았으므로, 정관에는 동일 취지의 조항이나 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2항 규정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

조문	유의사항
	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법 제34조, 제79조
③ 누구든지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法)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法)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법 제37조, 제79조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法)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 삭제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79조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회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고사항 ·법 제38조, 제79조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권고사항 ·법 제38조, 제79조

조문	유의사항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法)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	·법 제36조, 제79조

조문	유의사항
직한다.(法)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法)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u>○년</u> 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제79조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法)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法)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 개시되는 임기(4년의 범위 내)를 제외하고 추가로 2차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 (최대 12년) ·법 제35조, 제79조
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法)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法) ③ 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法) ④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연합회는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法)	·법 제44조, 제79조, 시행령 제10조
제52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u>이사회의 결정에 따라</u>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② 이사는 <u>회장을 보좌하며</u>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회장과 이사의 업무집행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 ·이사는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법 제41조, 제79조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직무대행 순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 또는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1조, 제79조

조문	유의사항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法)	·법 제41조, 제79조
제52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회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연합회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法)	·법 제14조, 상법 제287조의10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연합회는 이를 연합회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연합회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法) ③ 전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法)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法)	·법 제14조, 상법 제287조의10, 제198조
제52조의3(이사와 연합회 간의 거래) 이사는 회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연합회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法)	·법 제14조, 상법 제287조의11
제53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法)	·감사의 감사내용은 연합회 운영의 중요사항이며, 총회보고는 법상 의무임. 따라서 연합회의 연간 총회개최계획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보고 횟수도 정관에서 규율하는 것을 권고 ·법 제42조, 제79조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法)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法)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法)	·법 제41조, 제79조

조문	유의사항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4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法)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사와 연합회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예: 계약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43조, 제79조
제55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法)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法)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法)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法)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法)	·임원은 법령 및 총회·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법 제39조, 제79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권고사항
제56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제57조(임원의 해임) ① <u>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法)</u>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회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임요구는 임원이 법 제39조, 제41조, 제42조 등에서 규정한 임원의 의무와 직무 등을 위반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법 제40조, 제79조

조문	유의사항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法)	·해임이유 통보방식과 시기는 연합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관에 규정하는 것을 권고 ·해당 임원의 총회 의견 진술기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법 제40조, 제79조
④ 회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2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임원의 해임에 대한 기타 필요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해임사유, 해임절차 등)이나 규정(해임요구서 양식 등)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
제58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u>결산결과의 공고</u>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法)	·법 제49조제1항에 정하는 서류 외에 공개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9조, 제82조
② 연합회는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法)	·법 제49조, 제82조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결산보고서는 연합회 운영의 중요사항 중 하나이고, 경영공시 필수공개 자료이므로 공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法)	·연합회는 임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법 제49조, 제82조
⑤ 연합회는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권고사항
⑥ 연합회는 전체 회원 협동조합에 속한 총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0조의 필수사업(법 제80조 제1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9조의2 및 제82조, 시행령, 제12조

조문	유의사항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法)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59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0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法) 4.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法) 5.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法)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법 제80조 제1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연합회의 사업이 설립목적, 명칭, 회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 나열은 지양 ·기관의 목적이 담긴 일반적·광범위한 사업명 지양(예. 취약계층 고용 사업, 지역사회발전 사업)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업태명 참고하여 작성 권장 ·관계법령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 가능한 사업을 기재 ·법 제80조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法)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法)	·법 제80조
제60조의2(공제사업) ① 제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후,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연합회 설립신고 시에는 “공제사업”

조문	유의사항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法)	<u>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u> ·연합회는 공제규정을 정하고 공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제사업의 인가를 위해서는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80조의2, 시행령 제16조
②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제5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권고사항
제61조(사업의 이용) 연합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u>다음 각 호의 경우</u>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정관에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81조
②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	·공제사업은 회원 협동조합만 이용가능하고 회원 조합의 조합원은 이용 불가하다. ·법 제81조
제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法)	·사업계획 수립 주체와 기간을 정관에 규정할 것을 권고 ·법 제48조, 제82조
제7장 회계	
제63조(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u>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u> 로 한다.(法)	·연합회의 사업특성에 맞추어 정관에 규정한다. ·법 제47조, 제82조

조문	유의사항
제64조(회계) ①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法)	·법 제47조, 제82조
② 당해 연합회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연합회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법 제47조, 제82조
제65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다. ·특별회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66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法)	·법 제52조, 제82조
제67조(손실금의 보전)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法)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를 차감한 이후의 손실금을 의미 ·법 제51조, 제82조
제68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연합회는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法)	·잉여금 배당 방법은 정관에 자율적으로 결정가능하나 회원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 총회 결의로 할 것을 권고 ·법 제51조, 제82조
② 제1항의 배당 시 회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연합회 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法) 1. 연합회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법 제51조, 제82조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51조, 제82조

조문	유의사항
④ 연합회는 제67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法)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法)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연합회가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연합회로 통합되는 행위 ·“분할”이란 한 개의 연합회가 둘 이상의 연합회로 분리되는 행위 ·합병 또는 분할을 할 경우에도 연합회 설립 시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필요 ·법 제56조(①~⑥, ⑩), 제83조
제70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法)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해산”이란 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연합회의 권리능력 상실 ·연합회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해산 사유를 추가로 정관에 정할 수 있음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법 제57조, 제83조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法)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法)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법 제58조, 제83조

조문	유의사항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法)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u>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u>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잔여재산 분배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59조, 제83조
② 연합회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협동조합 (인) 발기인 ○ ○ 협동조합 (인) 발기인 ○ ○ 협동조합 (인)	※ 법인 인감도장 날인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

조문	유의사항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연합회는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회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86조, 제115조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을 목적으로 한다.	·연합회의 사업과 회원 유형에 맞는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과 달리 법인등기부상에는 '목적'만 등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등기신청 시에는 정관 제2조(목적)과 제60조(사업의 종류)를 통합하여 등기부상 '목적'사항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 제86조, 제115조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法)	·법 제7조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法)	·법 제8조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까지 적는다. ('경기도' · '강원도' 등은 지양) ·지사무소 설치 방법은 정관 위임사항으로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조
제5조(사업구역)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사업분야와 내용, 회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국내외' 또는 '전국'으로 정할 수도 있다.

조문	유의사항
제6조(광고방법) ① 연합회의 광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광고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정하는 경우, 정관에 사이트 주소까지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86조, 제115조
② 제1항의 광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권고사항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촉구)하는 의사를 알리는 것으로 제명 등의 사유로 회원에게 통지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회원이 지정한 연락처로 7일 이상 통지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법 제9조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法)	·(규약)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연합회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총회 의결사항인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규정)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대한 세부 절차나 필요서식(양식), 기타 협동조합 연합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인 규정으로 정함 ·법 제17조, 제72조 ·법 제17조, 제115조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u>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u> 사회적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法)	·연합회는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회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법 제73조) ·법 제73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제11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 자격 제한 가능 ·회원은 약정한 출자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짐 ·법 제86조, 제115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후 ○개월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출자금 납부 시기는 회원 자격과 연계되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法)	·법 제21조, 제115조
제12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13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法)	·협동조합연합회가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 탈퇴 회원의 출자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으나, 회원은 납입한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법 제22조, 제115조
제14조(탈퇴) ① 회원은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法)	·“탈퇴”란 협동조합연합회가 존속하는 중에 회원이 회원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탈퇴의사를 알리는 방법, 형식 등을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 가능 ·법 제74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法) 1.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제2항의 1,2호 외의 사유를 정관에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법 제74조, 제115조
제15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이란 협동조합이 특정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회 의결·가 필요 ·제명 의결 시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법 제25조, 제115조
2. <u>○년 이상 계속해서</u>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합회에서 기간만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함. 다만, 연합회의 주 사업 유형·특성 및 회원의 권리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단기간으로는 정하지 않도록 한다. ·법 제25조, 제115조
3.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호 외의 제명 사유는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法)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法)	·제명하고자 할 때는 제명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① 총회 10일 이전 제명사유 고지 및 ②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 ·법 제25조, 제115조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회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法)	·탈퇴/제명 회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 제89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②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 제89조, 제115조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法)	·행사시기는 법령사항이나 행사방법은 정관 위임사항으로 출자금환급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법 제89조, 제115조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法)	·법 제89조, 제115조
제17조(탈퇴·제명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연합회는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회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法)	·탈퇴/제명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범위)는 정관위임사항으로 연합회에서 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 탈퇴 회원의 출자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으나, 회원은 납입한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탈퇴·제명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범위)는 정관위임사항으로 연합회에서 결정하여 정할 수 있음 ·법 제90조, 제115조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회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회원이 출자해야 하는 출자좌수는 1좌 이상으로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제115조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法)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③ 출자금은 ○일까지 납입한다.	·출자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 취득 시기, 분납 가능횟수, 분납 완료 시기 등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일시납일 경우, 가입일부터 ○일까지/ 분납일 경우에도 ~까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法)	·법 제22조, 제115조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u>규약</u>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115조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권고사항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회원에게 발급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일 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지분변동상황은 회원 재산권과 관련되므로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7-10일 내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회원 지위의 양도 또는 회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회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조문	유의사항
⑤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받아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보유하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을 현금화 하여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 제55조, 제115조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권고사항
② 연합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法) ③ 연합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法)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法)	·출자좌수의 감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와는 달리 법령사항은 아니지만, 회원 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총회의 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 ·법 제53조, 제115조
⑤ 그 밖의 출자감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권고사항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法)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法)	·법 제54조, 제115조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연합회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회원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	·기타사항 ·연합회가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가능하다.

조문	유의사항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4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과태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가능하다. ·과태금 금액은 규약으로, 과태금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u>100분의 30 이상</u>을 적립하여야 한다.(法)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7조, 제115조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법 제97조, 제115조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u>100분의 〇〇 이상</u>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이란 연합회가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사업준비금 외에 정관으로 임의적립금의 다양한 목적을 정해 적립 가능하며,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 가능함 ·임의적립금의 적립범위는 정관에 정해야 한다. ·법 제97조, 제115조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u>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u> 지출할 수 있다.	·사업준비금 외에 임의적립금의 다양한 목적을 정할 수 있다. ·법 제97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法)	·“총회”란 회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연합 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연합회의 필수기관 및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의미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으로서 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법 제77조, 제115조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法)	·법 제28조, 제115조
제28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法)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法)	·대의원총회를 두지 않기로 한 경우, 정관 예시의 제29조, 제30조는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은 정관위임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반드시 정해야 한다. ·법 제31조, 제115조, 시행령 제9조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法)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100명 또는 100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다. ·법 제31조, 제115조
④ 대의원의 임기만으로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권고사항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法)	·법 제31조, 제115조
⑥ 대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대의원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출방법, 자격 등은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31조, 제115조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法) ⑨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	·법 제31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法)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대의원 의무, 자격상실 등에 대해서는 연합회 특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31조, 제115조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法)	·총회 소집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28조, 제115조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56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임시총회 소집사유, 소집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28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u>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u>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法)	·통지방법은 정관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이 입증 가능한 방법을 정해야 한다. ·공고 제목에 결정내용이나 주요 공고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28조, 제115조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의2(회원제안권) ①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회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한 회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회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회원은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으로 할 것을 회장에게 제안할 수 있음 ·회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배사항을 제외하고는 ·권고사항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法)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의 보수, 연합회의 차입금 한도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29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u>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법 제29조, 제115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연합회와 회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권고사항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회원의 제명 4.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 ·법 제29조, 제115조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당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75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法)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法)	·임시의장, 의장,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 기명날인 ·연합회의 회원(법인)은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임원(개인)의 경우에도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 날인 ·법 제30조, 제115조
제38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사항
제40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法)	·“이사회”란 연합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원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법 제32조, 제115조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法)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32조, 제115조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法)	·법 제32조, 제115조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개의(開議)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115조
⑤ 이사는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권고사항

조문	유의사항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회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1조에 정한 순서대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法)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1~4호, 6호는 법령사항)에서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호는 권고사항)을 추가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법 제33조, 제115조
② 이사회는 제5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제42조(이사회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법 제32조, 제115조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사회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115조
제43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u>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〇명 이내의 이사</u> 와 <u>1명 이상 〇명 이내의 감사</u> 를 둔다.	·임원의 정수는 법에서 규정한 최소 정수 (회장 1명 포함한 이사 3명, 감사 1명)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4조, 제115조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기타사항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法)	·임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 지식이 있어야 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115조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法) 다만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외의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34조, 제115조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〇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4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法)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에 속한 조합원의 배우자, 회원에 속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에 속한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법 제37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u>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u>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法)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하는 법 제37조 제2항과 동일 취지의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8헌가12)을 받았으므로, 정관에는 동일 취지의 조항이나 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2항 규정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법 제37조, 제115조
③ 누구든지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法)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法)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	·법 제37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法)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 삭제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115조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회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고사항 ·법 제38조, 제115조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권고사항 ·법 제38조, 제115조

조문	유의사항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法)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法)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法)	·법 제36조, 제115조
제4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제115조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法)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法)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 개시되는 임기(4년의 범위 내)를 제외하고 추가로 2차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최대 12년) ·법 제35조, 제115조
제50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法)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法)	·법 제44조, 제115조, 시행령 제10조

조문	유의사항
③ 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法)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연합회는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法)	
제51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u>이사회의 결정에 따라</u>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② 이사는 <u>회장을 보좌하며</u>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회장과 이사의 업무집행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 ·이사는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법 제41조, 제115조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직무대행 순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 또는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1조, 제115조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法)	·법 제41조, 제115조
제51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회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연합회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권고사항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연합회는 이를 연합회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연합회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권고사항

조문	유의사항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한 날로부터 2주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1조의3(이사와 연합회 간의 거래) 이사는 회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연합회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사항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法)	·감사의 감사내용은 연합회 운영의 중요사항이며, 총회보고는 법상 의무임. 따라서 연합회의 연간 총회개최계획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보고 횟수도 정관에서 규율하는 것을 권고 ·법 제42조, 제115조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法)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法)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法)	·법 제42조, 제115조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닐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法)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사와 연합회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예: 계약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43조, 제115조
제5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法)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法)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임원은 법령 및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조문	유의사항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法)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회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法)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法)	·법 제39조, 제115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권고사항
제55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제56조(임원의 해임) ① <u>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u>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法)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회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임요구는 임원이 법 제39조, 제41조, 제42조 등에서 규정한 임원의 의무와 직무 등을 위반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법 제40조, 제115조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法)	·해임이유 통보방식과 시기는 연합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관에 규정하는 것을 권고 ·해당 임원의 총회 의견 진술기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법 제40조, 제115조
④ 회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1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임원의 해임에 대한 기타 필요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해임사유, 해임절차 등)이나 규정(해임요구서 양식 등)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

조문	유의사항
제57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u>결산결과의 공고 등</u>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法)	·법 제49조제1항에 정하는 서류 외에 공개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6조, 제115조
② 연합회는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法)	·법 제96조, 제115조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결산보고서는 연합회 운영의 중요사항 중 하나이고, 경영공시 필수공개 자료이므로 공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法)	·연합회는 임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법 제96조, 제115조
⑤ 연합회는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권고사항
⑥ 연합회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法)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59조의 필수사업(법 제80조 제1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96조, 제115조, 시행령 제8조의2, 제12조
제58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9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법 제80조 제1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문	유의사항
3.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法) 4.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法) 5.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法)	·연합회의 사업이 설립목적, 명칭, 회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 나열은 지양 ·기관의 목적이 담긴 일반적·광범위한 사업명 지양(예. 취약계층 고용 사업, 지역사회발전 사업)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업태명 참고하여 작성 권장 ·관계법령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 가능한 사업을 기재 ·법 제80조, 제115조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法)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法)	
제59조의2(공제사업) ① 제5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法)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후,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u>연합회 설립신고 시에는 “공제사업”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u> ·연합회는 공제규정을 정하고 공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제사업의 인가를 위해서는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80조의2, 제115조, 시행령 제86조
②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	·권고사항

조문	유의사항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제5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u>다음 각 호의 경우</u>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정관에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81조제2항, 제115조, 시행령 제24조, 제25조
② 회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	·공제사업은 회원 사회적협동조합만 이용가능하고 회원 조합의 조합원은 이용 불가하다. ·법 제81조, 제115조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法)	·사업계획 수립 주체와 기간을 정관에 규정할 것을 권고 ·법 제48조, 제115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고사항
제7장 회계	
제62조(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u>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u>로 한다.(法)	·연합회의 사업특성에 맞추어 정관에 규정한다. ·법 제47조, 제115조
제63조(회계) ①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法)	·법 제47조, 제115조
② 당해 연합회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연합회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법 제47조, 제115조
제64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다. ·특별회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문	유의사항
제65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法)	·법 제52조, 제115조
제66조(손실금의 보전)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法)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회원에 배당할 수 없다.(法)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를 차감한 이후의 손실금을 의미 ·법 제98조, 제115조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法)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法)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연합회가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연합회로 통합되는 행위 ·“분할”이란 한 개의 연합회가 둘 이상의 연합회로 분리되는 행위 ·합병 또는 분할을 할 경우에도 연합회 설립시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필요 ·법 제101조, 제115조
제68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法)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해산”이란 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연합회의 권리능력 상실 ·연합회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해산 사유를 추가로 정관에 정할 수 있음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법 제102조, 제115조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조문	유의사항
제69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法)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法)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法)	·법 제103조, 제115조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法) 1.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3. 국고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104조, 제115조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사회적협동조합 (인) 발기인 ○ ○ 사회적협동조합 (인) 발기인 ○ ○ 사회적협동조합 (인)	※ 법인 인감도장 날인

3)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예시

조문	유의사항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연합회는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회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86조, 제115조의3
제2조(목적)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연합회 활동을 통하여 -----을 목적으로 한다.	·연합회의 사업과 회원 유형에 맞는 설립목적 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과 달리 법인등기부상에는 '목적'만 등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등기신청 시에는 정관 제2조(목적)과 제60조(사업의 종류)를 통합하여 등기부상 '목적'사항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 제86조, 제115조의3
※ 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②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8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②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8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法)	·법 제7조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法)	·법 제8조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상업등기법 제29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조문	유의사항
	군)까지 적는다. (‘경기도’ · ‘강원도’ 등은 지양) ·지사사무소 설치 방법은 정관 위임사항으로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조
제5조(사업구역)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사업분야와 내용, 회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정하며, 여러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국내외’ 또는 ‘전국’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제6조(공고방법) ①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oo.com)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공고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정하는 경우, 정관에 사이트 주소까지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86조, 제115조의3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권고사항 ·“최고”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촉구)하는 의사를 알리는 것으로 제명 등의 사유로 회원에게 통지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회원이 지정한 연락처로 7일 이상 통지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법 제9조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法)	·(규약)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연합회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 등 중요한 내용은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총회의 결사항인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조문	유의사항
	·(규정) 정관이나 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대한 세부 절차나 필요서식(양식), 기타 협동조합 연합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사항인 규정으로 정함 ·법 제17조, 제115조의3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u>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u>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法) 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연합회는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회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법 제115조의4
제11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 자격 제한 가능 ·회원은 약정한 출자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짐 ·법 제86조, 제115조의3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후 ○개월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출자금 납부 시기는 회원 자격과 연계되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法)	·법 제21조, 제115조의5
제12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13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法)	·협동조합연합회가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

조문	유의사항
	탈퇴 회원의 출자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으나, 회원은 납입한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법 제22조, 제115조의5
제14조(탈퇴) ① 회원은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法)	·"탈퇴"란 협동조합연합회가 존속하는 중에 회원이 회원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의무 상실 ·탈퇴의사를 알리는 방법, 형식 등을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 가능 ·법 제74조, 제115조의5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法) 1. 회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제2항의 1,2호 외의 사유를 정관에 추가로 정할 수 있다. ·법 제74조, 제115조의5
제15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명"이란 협동조합이 특정한 회원에 대하여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회 의결·가 필요 ·제명 의결 시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법 제25조, 제115조의5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法)	
2. <u>○년 이상 계속해서</u>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합회에서 기간만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함. 다만, 연합회의 주 사업 유형·특성 및 회원의 권리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단 기간으로는 정하지 않도록 한다. ·법 제25조, 제115조의5
3.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총회의결사항,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호 외의 제명 사유는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조문	유의사항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法)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法)	·제명하고자 할 때는 제명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① 총회 10일 이전 제명사유 고지 및 ②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 ·법 제25조, 제115조의5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6조(탈퇴·제명회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탈퇴/제명 회원에 대한 지분 환급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 제26조, 제115조의5
②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法) 다만,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115조의5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法)	·행사시기는 법령사항이나 행사방법은 정관위임사항으로 지분환급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법 제26조, 제115조의5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法)	·법 제26조, 제115조의5
제17조(탈퇴·제명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연합회는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회원의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法)	·탈퇴·제명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범위)는 정관위임사항으로 연합회에서 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 탈퇴 회원의 출자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으나, 회원은 납입한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탈퇴/제명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범위)는 정관위임사항으로 연합회에서 결정하여 정할 수 있음 ·법 제27조, 제115조의5

조문	유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6조(탈퇴·제명회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法)	·법 제89조, 제115조의5
②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 제89조, 제115조의5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7조에서 같다)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法)	·행사시기는 법령사항이나 행사방법은 정관위임사항으로 지분환급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법 제89조, 제115조의5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法)	·법 제89조, 제115조의5
제17조(탈퇴·제명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연합회는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 회원의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탈퇴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法)	·탈퇴/제명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범위)는 정관위임사항으로 연합회에서 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 탈퇴 회원의 출자금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으나, 회원은 납입한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탈퇴/제명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범위)는 정관위임사항으로 연합회에서 결정하여 정할 수 있음 ·법 제90조, 제115조의5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출자) ① 회원은 ○자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회원이 출자해야 하는 출자좌수는 1좌 이상으로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법 제22조, 제115조의5

조문	유의사항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法)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115조의5
③ 출자금은 ○일까지 납입한다.	·출자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 분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 취득 시기, 분납 가능횟수, 분납 완료 시기 등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일시납일 경우, 가입일부터 ○일까지/ 분납일 경우에도 ~까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法)	·법 제22조, 제115조의5
⑤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22조, 제115조의5
※ 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권고사항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일 후까지 회원의 지분 변동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지분변동상황은 회원 재산권과 관련되므로 신속하게 알려줘야 한다.(7-10일 내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조문	유의사항
제20조(지분의 범위) 연합회의 재산에 대한 회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된 준비금 등	·권고사항 ·지분의 범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한다
제20조의2(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회원 지위의 양도 또는 회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회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법 제55조, 제115조의8
※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권고사항
②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일 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출자금변동상황은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알려주면 된다.
제20조(출자금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회원 지위의 양도 또는 회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조문	유의사항
② 회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회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法)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받아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보유하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을 현금화 하여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 제55조, 제115조의8
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권고사항
② 연합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法) ③ 연합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法)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法)	·출자좌수의 감소는 출자 1좌 금액의 감소와는 달리 법령사항은 아니지만, 회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 ·법 제53조, 제115조의8
⑤ 그 밖의 출자감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권고사항
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法)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法)	·법 제54조, 제115조의8
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연합회는 사업운동을 위하여 회원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기타사항 ·연합회가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조문	유의사항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 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가능하다.
제24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과태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 가능하다. ·과태금 금액은 규약으로, 과태금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u>100분의 10 이상</u>을 적립하여야 한다.(法)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50조, 제115조의8
※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25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u>100분의 30 이상</u>을 적립하여야 한다.(法)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7조, 제115조의8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97조, 제115조의8
제26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u>100분의 ○○ 이상</u>	·"임의적립금"이란 연합회가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사업준비금 외에 정관으로 임의적립금의 다양한 목적을 정해 적립 가능하며,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

조문	유의사항
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가능함 ·임의적립금의 적립범위는 정관에 정해야 한다. ·법 제97조, 제115조의8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u>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u> 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사업준비금 외에 임의적립금의 다양한 목적을 정할 수 있다. ·법 제97조, 제115조의8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法)	·“총회”란 회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연합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연합회의 필수기관 및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의미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으로서 총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법 제77조, 제115조의6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法)	·법 제28조, 제115조의6
제28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法)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法)	·대의원총회를 두지 않기로 한 경우, 정관예시의 제29조, 제30조는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의원총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은 정관위임사항이므로 정관으로 반드시 정해야 한다. ·법 제31조, 제115조의6, 시행령 제9조
③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회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法)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의원을 100명 또는 100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다. ·법 제31조, 제115조의6
④ 대의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대의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대의원은 새로운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권고사항
⑤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法)	·법 제31조, 제115조의6

조문	유의사항
⑥ 대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대의원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출방법, 자격 등은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31조, 제115조의6
⑧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法) ⑨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法)	·법 제31조, 제115조의6
제29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대의원 의무, 자격상실 등에 대해서는 연합회 특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31조, 제115조의6
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法)	·총회 소집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28조, 제115조의6
제31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	·임시총회 소집사유, 소집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28조, 제115조의6

조문	유의사항
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56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u>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으로</u>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法)	·통지방법은 정관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이 입증 가능한 방법을 정해야 한다. ·공고 제목에 결정내용이나 주요 공고 내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회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법 제28조, 제115조의6
제32조의2(회원제안권) ①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장에게 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회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한 회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회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권고사항

조문	유의사항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제안을 한 자가 청구하면 총회에서 그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法)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u>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 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의 보수, 연합회의 차입금 한도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은 총회의결사항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29조, 제115조의6
제34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법 제29조, 제115조의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연합회와 회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회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권고사항
제35조(특별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조문	유의사항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회원의 제명 4. 탈퇴 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 ·법 제29조, 제115조의6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당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75조, 제115조의5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法)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法)	·임시의장, 의장,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 기명날인 ·연합회의 회원(법인)은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임원(개인)의 경우에도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 날인 ·법 제30조, 제115조의6
제38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타사항
제40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法)	·“이사회”란 연합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원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법 제32조, 제115조의6

조문	유의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法)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32조, 제115조의6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法)	·법 제32조, 제115조의6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사회의 개의(開議)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115조의6
⑤ 이사는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가 청구를 하였는데도 회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51조에 정한 순서대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권고사항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法)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u>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u> 6.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1~4호, 6호는 법령사항)에서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호는 권고사항)을 추가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법 제33조, 제115조의6
② 이사회는 제5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조문	유의사항
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法)	·법 제32조, 제115조의6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 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 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 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사회의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115조의6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 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 나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2조, 제115조의6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 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〇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〇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임원의 정수는 법에서 규정한 최소 정수(회 장 1명 포함한 이사 3명, 감사 1명)를 벗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34조, 제115조의6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기타사항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 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法)	·임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 선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 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지식 이 있어야 하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115조의6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法) 다만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 외의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법 제34조, 제115조의6
③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 생한 날로부터 〇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4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조문	유의사항
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法) 1. 회원에 속한 조합원(연합회에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회원에게 속한 조합원의 배우자, 회원에게 속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에게 속한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원에게 속한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법 제37조, 제115조의6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u>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u>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法)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을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하는 법 제37조 제2항과 동일 취지의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8헌가12)을 받았으므로, 정관에는 동일 취지의 조항이나 기간을 명확히

조문	유의사항
	명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2항 규정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법 제37조, 제115조의6
③ 누구든지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法)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法)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법 제37조, 제115조의6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法)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 삭제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115조의6
②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회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고사항 ·법 제38조, 제115조의6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이나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권고사항 ·법 제38조, 제115조의6

조문	유의사항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法)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한다.(法)	·법 제36조, 제115조의6

조문	유의사항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法)	
제4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u>○년</u> 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4년 범위 안에서 정관에서 정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제115조의6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法)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法)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 개시되는 임기(4년의 범위 내)를 제외하고 추가로 2차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최대 12년) ·법 제35조, 제115조의6
제50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法)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法) ③ 연합회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 회의를 겸직할 수 없다.(法)	·법 제44조, 제115조의6
④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연합회는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法)	·법 제44조, 제115조의6 ·시행령 제31조의5
제51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u>이사회의 결정에 따라</u>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② 이사는 <u>회장을 보좌하며</u>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회장과 이사의 업무집행 내용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 ·이사는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법 제41조, 제115조의6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직무대행 순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 또는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41조, 제115조의6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아닌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法)	·법 제41조, 제115조의6

조문	유의사항
제51조의2(이사의 경업금지) ① 이사는 회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연합회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연합회의 경우) 법령사항, 법 제14조, 상법 제287조의10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연합회의 경우) 권고사항
② 이사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연합회는 이를 연합회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연합회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이사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연합회의 경우) 법령사항, 법 제14조, 상법 제287조의10, 제198조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연합회의 경우) 권고사항
제51조의3(이사와 연합회 간의 거래) 이사는 회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연합회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연합회의 경우) 법령사항, 법 제14조, 상법 제287조의11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연합회의 경우) 권고사항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法)	·감사의 감사내용은 연합회 운영의 중요사항이며, 총회보고는 법상 의무임. 따라서 연합회의 연간 총회개최계획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보고 횟수도 정관에서 규율하는 것을 권고 ·법 제42조, 제115조의6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法)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法)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法)	·법 제42조, 제115조의6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문	유의사항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法)	·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사와 연합회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예: 계약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제43조, 제115조의6
제54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法)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法)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法)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法)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法)	·임원은 법령 및 총회·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 ·법 제39조, 제115조의6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권고사항
제55조(임원의 보수등) 상임임원의 보수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제56조(임원의 해임) ① <u>회원은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法)</u> 이 경우 해임에 동의하는 회원은 해임의 이유를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임요구는 임원이 법 제39조, 제41조, 제42조 등에서 규정한 임원의 의무와 직무 등을 위반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하다. ·법 제40조, 제115조의6
② 총회의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총회 소집절차를 거쳐 해임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조문	유의사항
③ 의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法)	·해임이유 통보방식과 시기는 연합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관에 규정하는 것을 권고 ·해당 임원의 총회 의견 진술기회는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법 제40조, 제115조의6
④ 회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1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임원의 해임 사유, 해임 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임원의 해임에 대한 기타 필요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해임사유, 해임절차 등)이나 규정(해임요구서 양식 등)으로 정하는 것을 권고
제57조(운영의 공개) ① 연합회는 <u>결산결과의 공고 등</u>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法)	·법 제49조제1항에 정하는 서류 외에 공개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96조, 제115조의8
② 연합회는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法)	·법 제96조, 제115조의8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결산보고서는 연합회 운영의 중요사항 중 하나이고, 경영공시 필수공개 자료이므로 공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法)	·연합회는 임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법 제96조, 제115조의8
⑤ 연합회는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권고사항
⑥ 연합회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法)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59조의 필수사업(법 제80조 제1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96조의2, 제115조의8, 시행령 제27조, 제31조의7

조문	유의사항
제58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기타사항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9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法) 4.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法) 5.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法)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법 제80조 제1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연합회의 사업이 설립목적, 명칭, 회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 나열은 지양 ·기관의 목적이 담긴 일반적·광범위한 사업명 지양(예. 취약계층 고용 사업, 지역사회발전 사업)해야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업태 명 참고하여 작성 권장 ·관계법령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 가능한 사업을 기재 ·법 제80조, 제115조의7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法)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法)	·법 제80조, 제115조의7
제59조의2(공제사업) ① 제5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法)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후,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연합회 설립신고 시에는 “공제사업”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연합회는 공제규정을 정하고 공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조문	유의사항
	·공제사업의 인가를 위해서는 회원의 수가 10인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80조의2, 제115조의7
②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제5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권고사항
제60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u>다음 각 호의 경우</u>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 2. ○○○	·회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경우 정관에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81조, 제115조의7, 시행령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의6
②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	·공제사업은 회원 협동조합만 이용가능하고 회원 조합의 조합원은 이용 불가하다. ·법 제81조, 제115조의7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法)	·사업계획 수립 주체와 기간을 정관에 규정할 것을 권고 ·법 제48조, 제115조의8
※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고사항

조문	유의사항
제7장 회계	
제62조(회계연도)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u>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u> 로 한다.(法)	·연합회의 사업특성에 맞추어 정관에 규정한다. ·법 제47조, 제115조의8
제63조(회계) ①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法)	·법 제47조, 제115조의8
② 당해 연합회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연합회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법 제47조, 제115조의8
제64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다. ·특별회계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65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法)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法)	·법 제52조, 제115조의8
※ 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66조(손실금의 보전)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法)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를 차감한 이후의 손실금을 의미 ·법 제51조, 제115조의8
제66조의2(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연합회는 제66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5조 및 제26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法)	·잉여금 배당 방법은 정관에 자율적으로 결정가능하나 회원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총회 결의로 할 것을 권고 ·법 제51조, 제115조의8
② 제1항의 배당 시 회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연합회 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法)	·이용실적 또는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법 제51조, 제115조의8

조문	유의사항
1. 연합회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51조, 제115조의8
④ 연합회는 제66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66조(손실금의 보전)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法)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회원에 배당할 수 없다.(法)	·법 제98조, 제115조의8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67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法)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法)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연합회가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연합회로 통합되는 행위 ·“분할”이란 한 개의 연합회가 둘 이상의 연합회로 분리되는 행위 ·합병 또는 분할을 할 경우에도 연합회 설립시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필요 ·법 제101조, 제115조의9
제68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해산”이란 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연합회의 권리능력 상실 ·연합회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해산 사유를

조문	유의사항
	추가로 정관에 정할 수 있음 ·해산과 동시에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 ·필요한 해산 사유를 추가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02조, 제115조의9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法)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法)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法)	·“청산”이란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관계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 ·법 제103조, 제115조의9
※ 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u>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u>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法)	·잔여재산 분배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59조, 제115조의9
② 연합회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조문	유의사항
※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70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法) 1.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3. 국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 ·법 제104조, 제115조의9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협동조합 (인) 발기인 ○ ○ 협동조합 (인) 발기인 ○ ○ 협동조합 (인) 발기인 ○ ○ 협동조합 (인) 발기인 ○ ○ 협동조합 (인)	※ 법인 인감도장 날인

4. 신청서류 검토 체크리스트

제출서류	검토 사항					
정관	주내용	비고				
	☐ 발기인 3개소(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5개소) 이상 기명날인 여부 확인	법 제14조, 민법 제20조				
	☐ 법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제86조(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외 사항은 자유롭게 규정 1. 목적 - 기관 고유 설립 목적과 일관성이 있는지 - 명확히 제시했는지 여부 - 사업내용 일치여부					
	2-1. 명칭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명칭 반드시 포함 - 개별법 협동조합의 고유 명칭 사용 불가 2-2. 소재지	법 제3조				
	3. 회원 자격	법 제73조, 제115조의4				
	4.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법 제24-25조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 정관 내 1좌 금액 명시 여부 - 정관 내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출자	법 제22조, 제76조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80,90,94조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table border="1"><tr><td>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영리)</td><td>출자금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할 것</td></tr><tr><td>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td><td>출자금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 3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할 것</td></tr></table> - 손실금 처리 순서(마쳐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 적합 여부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영리)	출자금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할 것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	출자금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 3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할 것	법 제51조, 제98조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영리)	출자금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할 것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	출자금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 3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할 것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법 제50조, 제97조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법 제80조					

제출서류	검토 사항	
	- 사업 내용 목적과 일관성 여부 - (필수사항)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 금융 및 보험업 영위 못함 - 신청 당시 공제사업 제외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직원 겸직 가능 - 전체 회원조합에 속한 총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임직원 겸직 가능 - 임원 정수 및 구성은 정관과 일치해야함	법 제34조 시행령 제10조, 제20조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함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유사 목적의 연합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고중 하나에 귀속	법 제59조, 제104조
	13. 지분(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회원 지위 또는 지분(출자금) 양도는 총회 의결 사항	법 제24조
	14. 출자금 환급 방법 - 출자금 환급은 총회 필수결의사항이며, 특별결의사항(회원 과반수이상 참석, 출석 회원 2/3이상 찬성)	
	15. 그 밖에 총회·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0조
창립총회 공고문	16. 발기인의 기명날인 확인 - <u>설립동의자 중 최소 3인 이상(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5인 이상) 기명날인</u>	법인인감 날인 (법 제14조, 민법 제40조)
	1.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정기간 이상(만 7일 이상) 공고기간 필요 - 공고기간 미준수의 경우, 회원 전원 참석 또는 미 참석자의 위임장 필요(총회 전에 받아야 함)	법 제28조
	2. 회원의 자격 요건	법 제73조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사항	시행령

제출서류	검토 사항	
	- 정관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의 선출 -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4. 설립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및 게시 여부 - 공고내용에는 필수공고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창립총회 의사록	1.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 의사정족수: 설립동의자 과반수 참석 - 의결정족수: 참석자 2/3이상 찬성	법 제29조
	2. 필수 의결 사항에 대한 의결 충족	
	3. 의장, 선출된 회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또는 총회 참석 이사 3명)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임시의장과 회장 불일치할 경우, 양자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법인은 법인인감으로 날인	
	4. 정관 승인 결의 이후, 임원 선출 여부	
	5. 임원 선출 이후, 회장 선출 여부	
사업 계획서	1. 신청서상의 설립 목적과 주사업 유형 일치 여부	
	2. 의사결정기구 회원 총회, 이사회는 반드시 체크	
	3. 직원 현황의 시점 - 신청년도 말 기준의 시점 기준 작성	
	4. 임원 명부와 임원 현황 일치 여부	
	5. 설립동의자 명부와 회원 현황 일치여부	
	6. 수입지출예산서와 사업 및 금액 일치여부	
	7. 법정서식 준수 여부 확인	
수입·지출 예산서	1. 정관의 사업명칭과 사업별 예산 내용과 일치 여부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사업계획서(신고양식) 상 사업별 예산 내용과 일치 여부 (수입과 지출의 합계가 같은지 확인)	
	3. 세부사업계획서와 사업별 예산 내용과의 일치 여부	
	4. 수입의 합계, 지출의 합계가 같은지 여부	
설립 동의자 명부	1. 법정서식 준수여부 확인	
출자자 명부	1. 신청서의 설립동의자수 / 총출자금액이 일치여부	
	2. 1좌 금액 정관 규정과 일치 여부	
	3. 회원 1인당 1좌 이상 출자하는지 여부	
	4. 회원 1인당 총 출자좌수의 40% 초과 여부	
임원명부 및 임원약력	1. 회장이 다른 연합회 회장 겸직 여부	
	2. 이사 및 직원의 감사 겸직 금지	
	3. 임원은 직원 겸직 금지	
	<겸직 가능 조건> - 협동조합연합회 : 회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겸직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직원을 겸직하는 인원수가 임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단, 회원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임원 총수의 1/3 초과하여 겸직 가능)	법제34조 법제44조 시행령 제10조
	- 정관 규정(임원 정수 및 구성 인원수)와 임원 구성일치 여부	
	4. 법정서식 준수여부 확인(임원명부의 경우)	
세부사업 계획서 (해당시)	1. 사업계획서(자체 작성)	
	2.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의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3. 해당기관 설립 목적, 사업내용 부합 여부	
	4. 사업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참고] 연합회 인가(신고) 신청 이후 절차

절 차	내 용	비고
①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신청인 → 기획재정부* • (서류 이관) 기획재정부 → 진흥원 • 진흥원 내 담당자 배정	기획재정부 진흥원
②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필요시 현장실사 계획 수립 (인터뷰 또는 소재지 현장방문)	진흥원
③ 서류 보완	• 필수서류, 보충서류 등 체크	진흥원
④ 검토결과 제출	• 현장조사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진흥원
④ 신고(인가)증 교부	• 검토보고서, 신청서류 등 검토 • 신고수리(인가) 여부 검토 • 설립신고(인가)증 교부	기획재정부

* 연합회 설립 신청 접수처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협동조합과

** 접수처 세부 주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청서 접수 안내' 글 참조

PART 3.

연합회 설립 마무리하기

—

1. 설립신고(인가)증 발급

- ▶ 설립신고서(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 발급 (기획재정부 → 신청기관)

□ 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래의 사항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설립신고(인가)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토요일·일요일 포함)은 산입하지 않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
 -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

[참고]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 설립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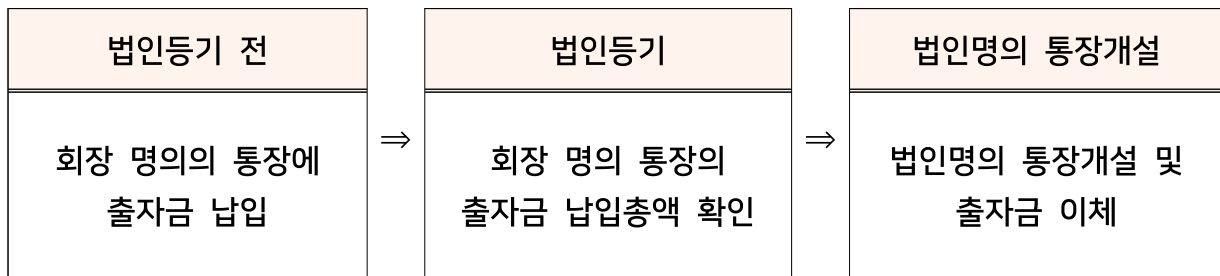
2. 사무 인계 및 출자금 납입

□ 사무 인계

- 발기인은 신고(인가)증을 받으면 지체 없이 총회를 통해 선출된 회장에게 설립사무 인계

□ 출자금 납입

- 회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회원이 되려는 협동조합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
 - 회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 시에는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 제출
 - ※ 설립신고(인가) 신청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해야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합회에 제출



3. 설립등기

□ 등기 기한

- 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 “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란 설립인가증이 도달한 날을 의미(법 제109조)

□ 등기 절차

- 신고(인가)증 수령 → 설립사무의 인계(발기인 대표 → 회장) → 출자금 납입(회장 명의 통장) → 등록면허세 납부 (시군구 세무 민원실) → 의사록 공증 → 등기 신청(관할 등기사무소)

□ 등기서류 및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법원행정처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인가증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 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6	인감증명서	등기신청서 기명날인한 법인의 인감증명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 출자 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입 확인서
9	위임장	회장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제출서류는 관할 등기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등기소에 확인 후 제출

4.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이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 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신고(인가)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7	자금출자명세서	
8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9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제출서류는 관할 세무서 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제출

PART 4.

제출 서식 모음



01.

법정서식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립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협동조합(연합회) 임원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해당[]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겸직 여부	해당[]	해당되지 않음[]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전단 또는 제7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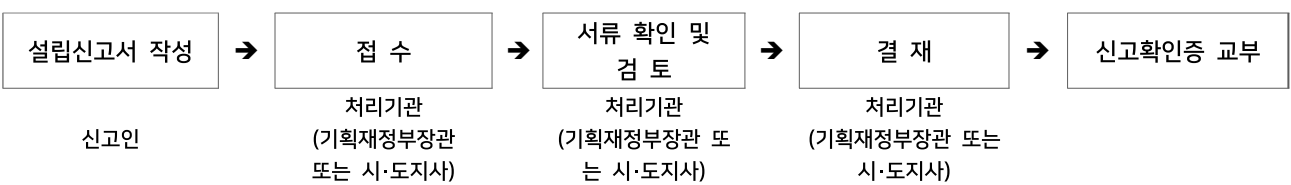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의자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1인당 최저출자금(원)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총자산 대비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작성	
주사업 유형 (·사회적 협동조합만 작성)	☐ 지역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2호) ☐ 취약계층 고용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 위탁사업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4호) ☐ 기타 공익증진형(「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5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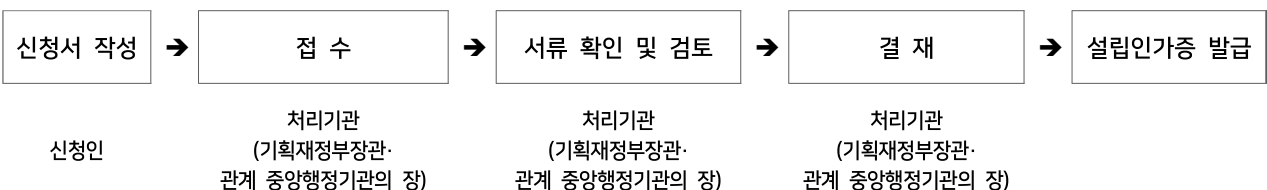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또는 설립에 동의한 사회적협동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 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설립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설립신청 내용	설립동의 조합 수(명)		출자금 납입총액(원)		창립총회 개최일
회원 현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총계
설립유형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제2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 명부(임원약력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에 동의한 조합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210mm×297mm[백상지 80g/m²]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쪽 중 1쪽)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합회 가입 현황(· 협동조합만 작성)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내용				
설립 목적						
의사결정 기구	[]조합원(회원)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조직도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조합원 현황 (· 협동조합만 작성하고, 해당 유형에만 표기)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직원 고용계획	명					

작성방법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
사업계획

작성방법

해당 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쪽 중 1쪽)

조직 개요	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조직 연혁	연월일	주요 내용

설립 목적	
----------	--

의사결정 기구	☐ 회원 총회 ☐ 대의원 총회 ☐ 이사회 ※ 중복 표시 가능
------------	---

조직도	
-----	--

임원 현황	직위	성명	경력	직원 겸직 여부

직원 고용 계획	
----------------	--

작성방법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
사업계획

작성방법

해당 연도 사업계획란에는 정관에 규정한 사업을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수입 · 지출 예산서

회계연도: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수입		(단위: 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기이월금					
사업수입	00사업		경상비	인건비	
	"			운영비	
	"			소계	
	소계		사업비	00사업	
사업외수입	기부출연금			"	
	지원금			"	
	기타			소계	
	소계		사업외지출	기부출연금	
출자금				지원금	
차입금				기타	
				소계	
기타수입			출자금반환		
"			차입금상환		
"			배당금		
"			기타지출		
"			차기이월금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신고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업수입 및 사업비 항목은 정관으로 정한 사업명에 준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수입 · 지출 예산서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계연도 : 000년도

조직 개요	조합명(연합회명)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설립 연월일		업태	
	인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사무소		
		제1 지사무소		
		제2 지사무소		
출자금		백만원		
주 사업 유형 · 사회적협동조합만 작성		☐ 지역사업형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 고용형 ☐ 위탁사업형 ☐ 기타 공익증진형		

수입 (단위:원)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구분		금액	구성비(%)
주 사업	○○사업			주 사업	○○사업		
	〃				〃		
	〃				〃		
	〃				〃		
기타사업	○○사업			기타사업	○○사업		
	〃				〃		
	〃				〃		
사업비 합계				사업비 합계			
사업외 수입	이자수익			경상비 (판매비와 관리비)	인건비		
	후원금 등				취약계층 인건비		
	〃				운영비 등		
	〃				〃		
출자금				사업외 비용	이자비용		
차입금					잡손실 등		
〃					〃		
〃				출자금 반환			
〃				차입금 상환			
〃				예비비 등			
합계				합계			

작성방법

1. 최초 설립인가 신청 시 조직 개요에 조합명(연합회명), 주소, 출자금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예시된 항목 외의 수입 또는 지출 항목이 있을 경우 모두 적습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구분, 금액, 구성비는 주 사업 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40% 이상일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건비와 취약계층 인건비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주 사업 및 기타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사업명에 준해 작성합니다.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회장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 내용	회원 수(개)	출자금 납입총액(원)	공제규정 의결 총회 개최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제2항, 제115조제2항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사업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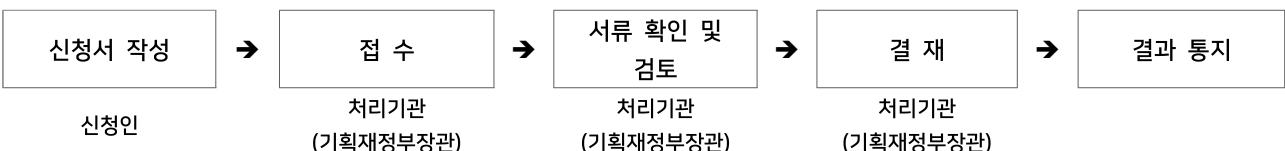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공제규정 사본 1부 3.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공제사업 계획서 1부 5. 공제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1부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PART 4.

제출 서식 모음



02.

자유 서식 예시

○○○ 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공고

○○○ 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연합회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 . . (○요일) 오전 ○○시
2.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회원 자격요건
 - 가.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 나.
4. 의결 사항
 - 가. 정관 확정
 - 나.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 다. 임원 선출
 - 라.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20 . . .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 함(법 제28조⑤, 영 제6조①)
(예) 7.2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민법상 기일 기산에 따라 20일이 아닌(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19일부터 역산하여 7일이 되는 12일까지 공고

(가칭) ○○○ 연합회
발기인 대표 ○ ○ ○ 협동조합 (인)

○○○ 연합회 창립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 . . (○요일)

2. 총회일시 및 장소

일시 : 20 . . (○요일) ○○시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참석자

가. 재적 설립동의자 : ○○개소

연번	법인명	이사장

나. 참석 설립동의자 : ○○개소

연번	법인명	이사장	총회 참석자

다. 참관인 : ○○명(□□□협동조합 □□□ 이사, △△협동조합 △△ 조합원)

4.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5. 총회 내용

가. 발기인대표 ○○○협동조합(이사장 □□□)이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나.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전체 설립동의자 ○○개소 중 ○○개소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기 지명과 기명날인인 선출

- 의장이 회의의 기록을 위한 서기로 ○○○을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하다.

※ 서기는 자연인을 지정

- 의장이 회의록 확인을 위한 기명날인인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기명날인인으로 ○○
○협동조합, △△△협동조합, ... ▽▽▽협동조합이 추천되다. 관련하여 승인을 묻고 회원
전원의 동의로 선출되다.

※ 기명날인인으로 설립동의자인 법인 중 3개소 이상을 지정하거나, 기명날인인을 별도로 지명
하지 않을 경우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라.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
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마.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 의장이 ○○○협동조합(□□□ 이사장) 회원에게 정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협동조합(□□□이사장) 회원이 정관의 목적, 연합회의 책무, 회원의 자격 등
각 조항에 대해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관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묻다.
- 의장이 정관을 확정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묻고, 회원 전원의 동의로 정관을 확정하다.

바. 제3호 의안.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협동조합(□□□이사장) 회원에게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
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협동조합(□□□이사장) 회원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설명하다.
- 의장이 20○○년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
고 회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사.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의장이 임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사로 ○○○, △△△, ... ▽▽▽,
감사로 ◇◇◇가 추천되다.

<이사후보>

- ○○○(○○○협동조합 이사장)
- △△△(□□□협동조합 이사)

<감사후보>

- ○○○(△△△협동조합 조합원)
- 임원후보 전원이 인사말을 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을 거수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회원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선출방법을 확정하다.

- 의장이 추천된 임원 후보 전원에 대한 찬성하는 회원은 거수할 것을 주문하여 전원이 동의하여 후보 전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다.
- 의장이 선출된 임원 전원에 대해 수락여부를 묻고 선출된 임원 전원이 수락하다.
- 의장이 이사로 선출된 자 가운데 회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고, ○○○ 이사를 회장으로 추천하다.
- ▽▽▽ 이사가 다른 후보가 없는지 확인하고, ○○○ 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주문하여 전원 동의로 선출하다.
- 의장이 회장으로 선출된 ○○○에게 이후 의사진행 권한을 이양하다.

아.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 안건

- 연합회의 주 사무소를 00(상세한 주소 기재 필요)에 두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묻다. 이견이 없음을 묻고 회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한다.
- 의장이 연합회 설립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된 내역 및 설립 시까지 소요 될 예상 경비를 보고하고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차후 설립인가(신고) 후 출자금 납입이 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다.
- 회원 ○○○협동조합(□□□이사장)이 동의하고 회원 △△△협동조합(○○○이사장)의 재청 및 회원 전원의 동의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하다.

자.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회원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연합회 창립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 . . .

(가칭) ○○○ 창립총회

회장 ○ ○ ○ (인)

임시의장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연합회 임원약력				
성명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년	월	일	학력 / 경력 / 자격 사항	비 고
위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인)				

○○○ 연합회 세부사업계획서

※ 이 사업계획서 양식은 참고용으로 연합회의 사업 특성에 맞게 서술

I. 사업 추진 배경 및 내외부 환경분석

- 연합회 설립의 주요 배경 및 필요성 등을 기재

구분	주요내용
설립 배경	- 연합회 추진배경 및 필요성
내외부 환경분석	- (외부) 사업 수요 분석 - (내부) 회원의 사업수행 경험 등

II.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정관상 사업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인력 배치 및 사업추진 계획, 향후 사업 발전 방향 등) 제시

구분	주요내용
사업목표	- 연합회 설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추진 방향 및 추진 체계	- 사무실(또는 사업장)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 - 인력 배치 및 확보 계획 - 사업 수행 일정 및 추진 계획, 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인력/물적자원 확보 등) 및 사업준비상황 등 제시

Ⅲ.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 정관에 기재한 사업의 수행계획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1) ○○○ 사업(정관의 사업내용과 일치되도록 작성)

구분	주요내용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수입확보 방안	

2) ○○○ 사업

구분	주요내용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수입확보 방안	

3) ○○○ 사업

구분	주요내용
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당해연도 세부계획 및 일정	
수입확보 방안	

IV. 예산 계획

1. 사업 예산 정리(※ 사업별 수입 지출 정리한 예산안 작성)

사업명	수입			지출		
AAA 사업	1. 0000 판매수입	0,000원×00회	00,000 원	1. 인건비	0,000원×0월	00,000원
	...	...	...	2. 교육비	0,000원×0회	00,000원
BBB 사업	1. 0000 판매수입	0,000원×00회	00,000 원	1. 인건비	0,000원×0월	00,000원
...	...	...		2. 교육비	0,000원×0회	00,000원
	합계			합계		

2. 운영 예산 정리(※ 사업 예산을 제외한 조직 운영에 경상비 예산 정리)

기관 운영비		
1. 인건비	0,000원×0월	00,000원
2. 교육비	0,000원×0회	00,000원
...	0,000원×0월	00,000원
합계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 협동조합연합회(가칭) 설립발기인회」에서 추진하는 ○○○협동조합연합회(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인가(신고)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회원 명부 작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 탈퇴시 파기하며, 출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 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는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제24조의2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설립인가(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유로 필요시 아래의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인가(신고) 관련 : 기획재정부, 주사무소 관할 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 임원 등의 결격사유 관련 : 경찰청(전국경찰관서)

나. 정보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합회의 설립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연합회(가칭) 설립발기인 대표 귀하

취 임 승 낙 서

본인은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창립총회에서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감사, 이사장 등)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사내이사(또는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감사, 이사장 등)
홍 길 동

인감

〇〇〇 연합회 귀중

(가칭)00(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개최 공고

(가칭)000(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23. 00. 00. (금요일) 오후 3시
2. 장소 :
3. 참석요건:
4. 의결 사항

가. (가칭)000연합회 가입 의결의 건

0000년 0월 0일

00(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000 (인)

○○○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의사록

※ 각 회원사들이 해당 조합에서 연합회 가입을 의결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회원사별로 내부 정관/규약/규정 등에 맞도록 이사회 혹은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절한 의결을 거쳐야 함

1. 이사회 개최 공고일 : 20 . . (○요일)

2. 이사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 . . (○요일) ○○시

장소 : ○○시 ○○구 ○○○로 ○○○-○, ○○빌딩 ○○○호

3. 참석자

재적 이사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 ▽▽▽(재적 이사 이름 나열)

참석 이사 : ○○명(개인 ○○명, 법인 ○개)

- ○○○, △△△, ... ▽▽▽(참석 이사 이름 나열)

4. 이사회 안건

- 제1호 의안. (가칭)○○○연합회 가입의 건

5. 이사회 내용

가. 이사장 ○○○가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나.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

- 전체 이사 ○○명 중 ○○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기 지명과 기명날인인 선출

- 의장이 회의의 기록을 위한 서기로 ○○○ 이사를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전원 수락하다.

- 의장이 회의록 확인을 위한 기명날인인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기명날인인으

로 ○○○, △△△, ... ▽▽▽가 추천되다. 관련하여 승인을 묻고 이사 전원의
동의로 선출되다.

라.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고, 전원 동의로 의안 순서를 확정하다.

마. 제1호 의안. (가칭)000연합회 가입의 건

- 의장이 ○○○이사에게 (가칭)000연합회 가입의 건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가 (가칭)000연합회 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의 필요성 및 배경 등
연합회 가입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다.
- 의장이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고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가
칭)000연합회 가입의 건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주문하여 이사 전원의
동의로 승인하다.

사. 폐회 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다른 안건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이사들에게 의결사항을 재차 확인한 다음 ○○○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20 . . .

(가칭) ○○○ 협동조합 이사회 (법인인감 날인)

이사장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의사록 기명날인인 ○ ○ ○ (인)

